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상 대 위험	다 소 위험	보 통 위험	낮 은 위험	매 우 낮 은 위험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4. 작성기준일: 2025년 3월 1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년 5월 2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22년 4월 10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본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DS8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DS8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DS84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S-T)	DS847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일부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일로부터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시 추징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5.03.17)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DS842)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NH-Amundi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및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주식 가격변동위험, 중소형주 투자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으로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국내외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아래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펀드명칭	투자한도	주요 전략
NH-Amundi 중소형주 증권모(母)투자신탁 1 호[주식]	자산총액의 55%이상 (실질국내주식보유 비율 ¹ 은 40% 이상)	국내 중소형주(KOSPI 또는 KOSDAQ 시가총액비중이 1% 미만인 주식)에 주로 투자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산총액의 40%이하	향후 글로벌 성장과 투자의 핵심 요소인 '혁신적 파괴(Disruption)' 테마에 부합하는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

주1) 실질 국내주식보유비율: 해당 모투자신탁(NH-Amundi 중소형주 증권모(母)투자신탁1호[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해당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며, 이 투자신탁도 별도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1.195	0.6	1.9200	1.2092	124	253	386	668	1,47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0.895	0.3	1.1800	0.9101	93	190	291	506	1,12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S-T)	없음	0.765	0.17	-	0.7801	80	163	250	435	970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합성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수 (혹은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1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24.03.18 ~25.03.17	최근 2 년 23.03.18 ~25.03.17	최근 3 년 -	최근 5 년 -	설정일 이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e) (%)	2023.03.17	13.43	17.88			18.51			
	비교지수 (%)		-	-	-	-	-			
	수익률 변동성(%)		13.47	12.52			12.52			
(주 1) 비교지수: 해당사항없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25.03.17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개,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외혼합-주식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안형준	1985	책임 (팀장) 국내주식운용	9	3,758	14.45	18.93	17.28	10.72	7년 6개월
	고건희	1991	부책임 (과장) 국내주식운용	11	2,199	14.45	-	17.28	10.72	8년 2개월
이능규	1985	책임 (팀장) 해외주식운용	14	2,242	14.45	-	17.28	10.72	8년 11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 2 본부 및 글로벌주식 1 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상기 운용전문인력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담당 본부 및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 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증권의 가격 변동,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 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중소형주 증권모(母)투자신탁 1호[주식]'은 중소형주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중소형주증권모(母)투자신탁 1호[주식]'이 주로 투자하는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 및 가격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소형주의 경우 회사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경제상황 변동의 악재 등에 더 민감하고 거래량도 급속히 감소할 수 있어, 가격하락폭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이 대형주 투자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해외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정주식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 주로 투자하는 주식은 특정 산업에 속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 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자산은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가 원화 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며, 이 투자신탁도 별도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펀드는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해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7 시 이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 시 경과 후: 4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7 시 이전: 4 영업일 기준가 8 영업일 지급 • 17 시 경과 후: 5 영업일 기준가 9 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																		
과세	<table><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td></tr></table>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사항>																		
	<table><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tr><td>가입자격</td><td>가입일 현재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에 한함</td></tr><tr><td>가입기간</td><td>2024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 이 투자신탁의 경우, 매입청구일(자금납입일)로부터 3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하므로, 2024 년 12 월 27 일 17 시 이전까지의 매입청구(자금납입)분까지 적용됩니다.</td></tr><tr><td>저축계약기간</td><td>3 년 이상 5 년 이하 ※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td></tr><tr><td>가입한도</td><td>연 600 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td></tr><tr><td>세제혜택</td><td>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연 240 만원 한도)</td></tr><tr><td>감면세액추징</td><td>가입 후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시 추징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td></tr><tr><td>기타</td><td>i) 가입자의 총급여액이 8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ii) 종합소득금액이 6 천 7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iii)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iv)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함</td></tr></table>			구분	주요 내용	가입자격	가입일 현재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에 한함	가입기간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 이 투자신탁의 경우, 매입청구일(자금납입일)로부터 3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하므로, 2024 년 12 월 27 일 17 시 이전까지의 매입청구(자금납입)분까지 적용됩니다.	저축계약기간	3 년 이상 5 년 이하 ※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 600 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연 240 만원 한도)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시 추징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	기타	i) 가입자의 총급여액이 8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ii) 종합소득금액이 6 천 7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iii)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iv)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함
	구분	주요 내용																	
	가입자격	가입일 현재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에 한함																	
	가입기간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 이 투자신탁의 경우, 매입청구일(자금납입일)로부터 3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하므로, 2024 년 12 월 27 일 17 시 이전까지의 매입청구(자금납입)분까지 적용됩니다.																	
	저축계약기간	3 년 이상 5 년 이하 ※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 600 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연 240 만원 한도)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시 추징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																		
기타	i) 가입자의 총급여액이 8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ii) 종합소득금액이 6 천 7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iii)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iv)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함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관련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5 페이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																

효력발생일	2025 년 5 월 22 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9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th></tr><tr><td>판매수수료</td><td>수수료 미징구</td><td>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td></tr><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td><td>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tr><td>온라인슈퍼</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1
3. 모집예정금액	11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1
5. 인수에 관한 사항	11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1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2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2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2
4. 집합투자업자	12
5. 운용전문인력	13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6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8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8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20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2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27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3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1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3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38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49
1. 재무정보	4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53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54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59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59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61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62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63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3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3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65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6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68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70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73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74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74
용 어 풀 이	75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	DS8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DS8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DS84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S-T)	DS84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종류명(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원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최소설정일 기준 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22년 4월 10일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를 통하여 모집 및 판매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	DS8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DS8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DS84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S-T)	DS84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2.04.29	운용전문인력 변경(박혜정 → 최병근)
2023.03.17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내역 추가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3.02.20시행) 반영
2023.09.15	운용전문인력 변경(최병근 → 이능규)
2024.01.1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023.12.31 시행) 반영
2024.02.01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박진호→안형준, 부책임: 안형준→고건희)
2024.04.12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4.03.01시행) 반영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2024.01.25) 반영
2025.05.22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종류 S 등 수익증권 관련 설명) 개정사항 반영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변경 반영 - 채권평가회사 추가(이지자산평가) - 설정 후 6개월 경과에 따른 관련 문구 삭제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Tel: 02-368-3600, www.nh-amundi.com)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 및 업무 위탁 범위

해당 펀드	위탁운용사	업무위탁범위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CPR Asset Management	운용업무, 운용지시, 조사분석,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위탁운용사명	CPR Asset Management (설립연도: 1989년)
회사 주소	90 Boulevard Pasteur, F 75730 Paris, France Tel : +33 1 53 15 70 00
회사 소개	‘CPR Asset Management’ 는 아문디(Amundi) 그룹의 자회사로 25년 이상의 운용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테마 투자에 특화된 글로벌 자산운용사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운용규모: 약 460억 유로)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25.03.17 기준)

[국내부문]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안형준	1985	팀장 (국내주식운용)	7년 6개월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2019.08~현재 NH-Amundi자산운용 주식운용2본부 - 2018.04~2019.08 하나UBS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리서치팀 - 2016.05~2018.04 안다자산운용 주식운용부 - 2011.12~2016.04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국내부문]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고건희	1991	과장 (국내주식운용)	8년 2개월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2023.10 ~현재 NH-Amundi자산운용 주식운용2본부				
	- 2021.06 ~ 2023.10 IBK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액티브1팀				
- 2017.01 ~ 2021.06 삼성생명 특별계정사업부 변액주식운용부					
[해외부문]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이능규	1985	팀장 (해외주식운용)	8년 11개월	1	39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2022.06~현재 NH-Amundi자산운용 글로벌주식1팀				
	- 2020.07~2022.05 신한자산운용 글로벌투자운용본부				
- 2018.07~2020.07 농협중앙회 상호금융해외증권팀					
- 2018.01~2018.07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복지전략실					
- 2016.03~2018.01 과학기술인공제회 증권투자실					
- 2015.01~2016.02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급여실					
- 2014.05~2014.08 KTB투자증권 파생운용팀					
- 2012.07~2014.01 롯데케미칼 UZ 프로젝트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2본부 및 글로벌주식1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상기 운용전문인력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담당 본부 및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5)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5.03.17 기준)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주식형)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좌)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안형준	9	3,758	14.45	18.93	17.28	10.72
고건희	11	2,199	14.45	-	17.28	10.72
이능규	14	2,242	14.45	-	17.28	10.72

- 주1)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기구 분류상 2차, 3차 분류기준)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팀운용이지만,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상기 책임운용인력 및 부책임운용인력이 운용한 펀드의 평균운용성과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다만,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1) NH-Amundi 중소형주 증권모(母)투자신탁1호[주식] (2025.03.17 기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안형준	1985	팀장	7년 6개월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2019.08~현재		NH-Amundi자산운용 주식운용2본부			
- 2018.04~2019.08		하나UBS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리서치팀			
- 2016.05~2018.04		안다자산운용 주식운용부			
- 2011.12~2016.04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고건희	1991	과장	8년 2개월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2023.10 ~현재		NH-Amundi자산운용 주식운용2본부 주식2팀			
- 2021.06 ~ 2023.10		IBK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액티브1팀			
- 2017.01 ~ 2021.06		삼성생명 특별계정사업부 변액주식운용부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좌)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안형준	9	3,758	1.78	12.53	5.26	11.62
고건희	11	2,199	13.73	-	5.26	11.62

(2)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5.03.17 기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운용규모 (억원)

				기구 수 (개)	
	1985	팀장	8년 11개월	1	39
이능규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2022.06~현재 NH-Amundi자산운용 글로벌주식1팀 - 2020.07~2022.05 신한자산운용 글로벌투자운용본부 - 2018.07~2020.07 농협중앙회 상호금융해외증권팀 - 2018.01~2018.07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복지전략실 - 2016.03~2018.01 과학기술인공제회 증권투자실 - 2015.01~2016.02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급여실 - 2014.05~2014.08 KTB투자증권 파생운용팀 - 2012.07~2014.01 롯데케미칼 UZ 프로젝트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좌)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능규	14	2,242	7.36	-	24.58	24.91

다.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부문	운용인력	부문	운용인력
2023.09.15	해외부문	책임: 최병근(글로벌주식1팀)	해외부문	책임: 이능규(글로벌주식1팀)
2024.02.01	국내부문	책임: 박진호(주식운용1본부) 부책임: 안형준(주식운용2본부)	국내부문	책임: 안형준(주식운용2본부) 부책임: 고건희(주식운용2본부)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3단계 구분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3단계 구분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온라인 (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S-T)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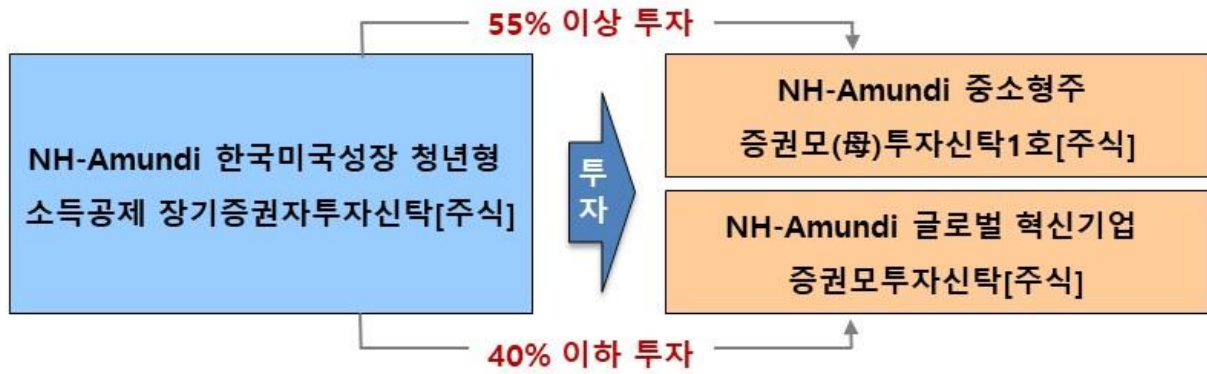
주1) 이 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3단계 구분(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펀드특성)에 따른 종류형 펀드의 대표적인 차이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6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으로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NH-Amundi 중소형주 증권모(母)투자신탁1호[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도 일부(40%이하) 투자하여 국내외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55% 이상 다만, 매일의 실질 국내주식보유비율 ^{주 1)} 은 40% 이상	NH-Amundi 중소형주 증권모(母)투자신탁 1 호[주식]
		40% 이하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2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
④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 및 ②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 ① 및 ②의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③ 및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1) 실질 국내주식보유비율: 해당 모투자신탁(NH-Amundi 중소형주 증권모(母)투자신탁1호[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해당 모투자신탁(NH-Amundi 중소형주 증권모(母)투자신탁1호[주식])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을 말합니다.

주2)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3)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구분	투자제한 사항	적용 예외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장외파생상품 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235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법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③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 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NH-Amundi 중소형주 증권모(母)투자신탁 1 호[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5%이상을 투자하고,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다만, 'NH-Amundi 중소형주 증권 모(母)투자신탁 1 호[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NH-Amundi 중소형주 증권 모(母)투자신탁 1 호[주식]'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NH-Amundi 중소형주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각 개별주식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증권모(母)투자신탁 1 호[주식]	수익을 내고 있는 중소형주(KOSPI 또는 KOSDAQ 시가총액비중이 1%미만인 주식)에 집중적으로 발굴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향후 글로벌 성장과 투자의 핵심 요소인 '혁신적 파괴(Disruption)' 테마에 부합하는 해외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4차 산업(Industry 4.0),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Life science and Health), 환경(earth) 등을 주요 테마로 하여 전세계 다양한 섹터에 투자하며 변동성 및 밸류에이션이 골고루 분산되는 투자를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합니다.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과 비교할 수 있는 수익률이 없으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2) 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방안

-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수행
- 위험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
 - (1) 시장위험: 금리, 환율 등 시장 변동으로 투자자산 가치감소위험
 - (2) 신용위험: 채무자(계약상대방)의 채무(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위험
 - (3) 유동성 위험: 투자자산의 유동성부족으로 환매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위험

② 환위험 관리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며, 이 투자신탁도 별도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환헤지란?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펀드는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유동성리스크 위험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 ① '유동성리스크'란 시장에서 거래부족이나 장애 등으로 집합투자재산 등을 정상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격변동을 초래할 위험과 만기 해지청구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위험을 말합니다.

②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을 분류,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리스크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유동성위험 분류

- 펀드의 대규모 환매 시 환금성 제약 발생 가능
-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주식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

▶ 집합투자재산의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펀드 내 현금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상시적인 자금유출과 자금의 과부족을 사전에 대비
- 국내주식형 모펀드의 경우, 유동성이 낮은 자산(메자닌, 비상장 주식 등)과 시가총액이 1000 억 이하 종목의 편입을 제한하고, 종목별 거래량을 감안해 포트폴리오 구성
- 해외주식형 모펀드의 경우, 특정 서브섹터에 25%이상 투자하지 않고, 전체 NAV 대비 원화 현금 비중을 최소 1~5% 수준으로 비중 유지

③ 비상조치계획

▶ 위기대응 업무프로세스 지침 등에 의거, 사전에 수립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위기 관리

- 위기예방: 리스크 지표 별 정기 모니터링, 주기적 포트폴리오 분석 및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등 시행
- 위기인지: 위기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 위기대응
 - 대표이사, 부사장 및 각 주요 부서장들로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를 운영
 - 위기대응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필요시 유동성 관련 비상 대책 시행
 - 기타 각 부서별 업무분장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위기대응 조치 시행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증권의 가격 변동,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 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위험	경제 상황이나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의 여건 또는 해당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종목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높은 위험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 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자산은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가 원화 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중소형주 증권모(母)투자신탁1호[주식]'은 중소형주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중소형주증권모(母)투자신탁1호[주식]'이 주로 투자하는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 및 가격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소형주의 경우 회사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경제상황 변동의 악재 등에 더 민감하고 거래량도 급속히 감소할 수 있어, 가격하락폭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원금액 손실이 대형주 투자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는 해외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정주식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 주로 투자하는 주식은 특정 산업에 속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소득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고 환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개장 및 폐장시각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업무처리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펀드규모위험	집합투자기구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자산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이익 증대 등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① 다음과 각 호의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특히, 상기 3, 4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의무 해지)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상기의 투자위험은 작성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 의해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추후 이 투자신탁의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하여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위험등급	변경사유
-	-	-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등급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주1) NH-Amundi자산운용은 운용중인 펀드의 위험수준을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온라인 (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S-T)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3)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① 17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② 17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로부터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이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17시 이전에 매입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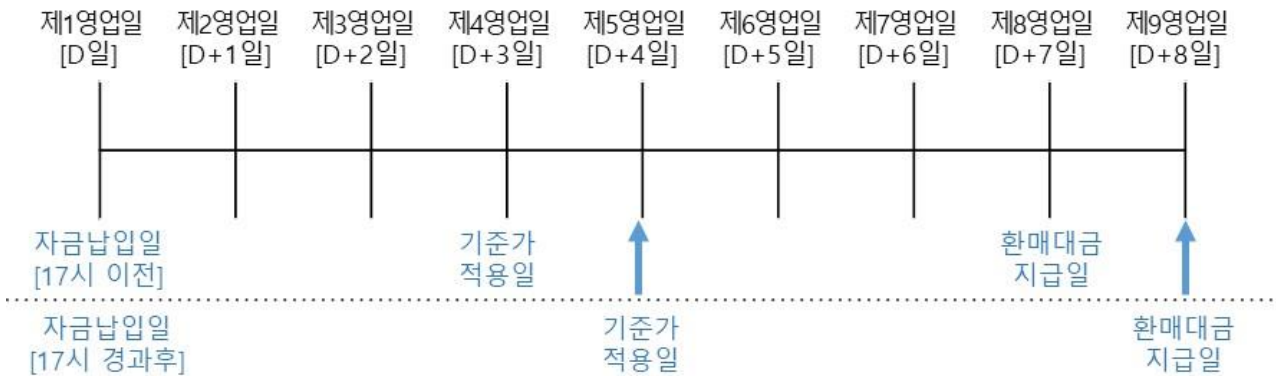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구분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	○

※ 환매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 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② 17 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 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투자신탁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이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17시 이전 환매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 집합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매 영업일 평가시점 현재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해당 평가시점 현재 기발행된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되며 그 산정 결과를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펀드간 판매보수가 차등 적용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각 종류간에 기준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2)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 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및 해외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채무증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자가 제공한 가격 (1) 채권평가회사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 신용평가업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5)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6) (1)~(5)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7) (1)~(6)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환매 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S-T)	-	-	-	-
부과시기	매입시	환매시	전환시	환매시

주1) 선취,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판매수수료를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 총보수 ·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0.5500	0.6000	0.0300	0.0150	1.1950	1.9200	0.0009	1.1959	1.2092	0.249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5500	0.3000	0.0300	0.0150	0.8950	1.1800	0.0018	0.8968	0.9101	0.249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S-T)	0.5500	0.1700	0.0300	0.0150	0.7650	-	0.0018	0.7668	0.7801	0.2493
지급시기	매 3 개월 후급,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 시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며,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상기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3.17 ~ 2025.03.16]

주2)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성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Repo·콜·대차 또는 대주·현금 등 중개수수료 등 (다만,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 수수료 계약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환급되는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4,977
금융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 등	-

- 상기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3.17 ~ 2025.03.16]

- 상기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3.17 ~ 2025.03.16]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전전월말 기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3	250	382	661	1,45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4	253	386	668	1,4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2	188	287	499	1,10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3	190	291	506	1,1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T)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9	160	246	428	953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80	163	250	435	97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금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종료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수익자는 ①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③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서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가능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절차가 없으며,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펀드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6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의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
가입자격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에 한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입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 이 투자신탁의 경우, 매입청구일(자금납입일)로부터 3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하므로, 2024년 12월 27일 17시 이전까지의 매입청구(자금납입)분까지 적용됩니다.
저축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 ※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하지 않음. 다만, 전환가입(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음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시 추징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1.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경우 2.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3.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관련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NH-Amundi 중소형주 증권 모(母)투자신탁 1호[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주식	60% 이상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가. 제 1 호에서 정의된 주식 중 KOSPI 또는 KOSDAQ 시가총액비중이 1%미만인 주권(이하 "중소형주"라 한다)
채권	4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한다.)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재산 (총자산)의 10%이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수익증권 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다만, 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증권의 대여 ^{주3)}	증권 총액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50% 이하	
증권의 차입 ^{주4)}	자산 총액의 20% 이하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 공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투자한도의 예외	-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신탁계약서 제18조제8호, 제19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5호 내지 제9호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증권에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증권의 대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에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자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종목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단,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①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② 파생결합증권 ③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④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⑥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⑦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 매월 말일을 기준을 산정하며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이 10%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 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증권(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③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제5호 가목의(2)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제5호가목의 (1), (2)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투자신탁(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기준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장외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235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법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구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 투자 전략

① 기본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여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②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각 개별주식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중소형주(KOSPI 또는 KOSDAQ 시가총액비중이 1%미만인 주식)에 집중적으로 발굴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③ 비교지수

- KOSPI 중형주* (70%) + KOSDAQ* (30%)

※ KOSPI 중형주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중 시가총액 101위부터 300위까지 200개 종목으로 산출하는 지수이며, KOSDAQ지수는 코스닥시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코스닥에 상장된 보통주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발표되는 지수입니다. KOSPI 중형주지수 및 KOSDAQ 지수는 www.krx.c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된 비교지수(벤치마크)와 변경 사유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2) 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방안

- 이 집합투자기구는 장기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시장변화를 예측하여 시장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시장의 강세가 예상될 경우, 가격 탄력성이 높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증권시장의 약세가 예상될 경우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그렇지 아니한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계획은 이 투자신탁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 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의 폭은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자집합투자기구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2.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주식	6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합니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합니다)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합니다)(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합니다)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합니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한도의 예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제2호 내지 제3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서 제19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및 나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종목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구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제한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구분	투자제한 사항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장외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235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법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 투자 전략

- 이 투자신탁은 향후 글로벌 성장과 투자의 핵심 요소인 ‘혁신적 파괴(Disruption)’ 테마에 부합하는 해외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4차 산업(Industry 4.0),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Life science and Health), 환경(earth) 등을 주요 테마로 하여 전세계 다양한 섹터에 투자하며 변동성 및 밸류에이션이 골고루 분산되는 투자를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합니다.
- 투자 프로세스
 - ① Disruptive 투자 유니버스 구성

각 섹터의 트렌드와 영향력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적(AI)인 접근과 매니저·애널리스트의 리서치 및 분석을 통해 disruptive 관련 600 여개 투자 종목 유니버스 구성

② 정량적 종목 스크리닝

CPR 자산운용의 내부 리서치 툴(PMS, HOLT 등)을 이용하여 150 여개의 우수 투자 종목 선별

③ 펀더멘털 분석

수익, 성장성, 마진, 밸류에이션 등 종목별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 80 여개의 투자 종목 선정

④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및 모니터링

상승잠재력 및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종목별 등급을 기준으로 투자 비중을 결정하여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 이 투자신탁의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CPR Asset Management'에서 수행합니다.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상기의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2) 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방안

-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수행
- 위험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
 - (1) 시장위험: 금리, 환율 등 시장 변동으로 투자자산 가치감소위험
 - (2) 신용위험: 채무자(계약상대방)의 채무(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위험
 - (3) 유동성 위험: 투자자산의 유동성부족으로 환매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위험

② 환위험 관리

-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 별로 환헤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란?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펀드는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주식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자집합투자기구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기(2024.03.17 - 2025.03.1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기(2023.03.17 - 2024.03.1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25.03.16)	(2024.03.16)	
운용자산	3,128,827,268	1,073,996,871	
증권	2,858,101,653	994,147,037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270,725,615	79,849,834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1,473,108	99,962	
자산총계	3,130,300,376	1,074,096,833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3,046,178	0	
부채총계	3,046,178	0	
원본	2,232,069,462	859,236,356	
수익조정금	297,980,539	130,125,020	
이익잉여금	597,204,197	84,735,457	
자본총계	3,127,254,198	1,074,096,833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24.03.17 - 2025.03.16)	(2023.03.17 - 2024.03.16)	
운용수익	205,354,624	84,735,457	
이자수익	4,422,482	1,013,671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차익(손)	200,932,142	83,721,786	
기타수익	0	0	
운용비용	0	0	
관련회사 보수	0	0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0	0	
당기순이익	205,354,624	84,735,457	
매매회전율	387.38	430.39	

-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주식의 투자 비중만을 감안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주2) "가. 요약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가. 요약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4)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4.03.17 - 2025.03.16)			전기(2023.03.17 - 2024.03.16)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5,268	4.9716	0.0944	1,349	1	0.0972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10	0.0052	0.051	0	0	0.0101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5,278	5	0.0943	1,349	1	0.0971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상기의 거래비용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85,730	3,004	94,990	3,346	864	387.38	32.11

주1)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기준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분기영업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분기별 누적 평균 매매회전율을 공시한 자료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주식의 투자 비중만을 감안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투자신탁명 :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

[단위:원]

과목	제2기(2025.03.16)		제1기(2024.03.16)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70,725,615		79,849,834		
1. 현금및현금성자산	270,725,615		79,849,834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2,858,101,653		994,147,037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858,101,653		994,147,037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473,108		99,962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265,713		99,962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207,395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3,130,300,376		1,074,096,833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3,046,178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3,046,178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3,046,178				
자 본						
1. 원 본	2,232,069,462		859,236,356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895,184,736		214,860,477			
(발행좌수 당기: 2,232,069,462 좌		이익잉여금	597,204,197		84,735,457	
전기: 859,236,356 좌		수익조정금	297,980,539		130,125,020	
전전기: 0 좌)						
(기준가격 당기: 1,386.40 원						
전기: 1,234.71 원						
전전기: 0.00 원)						
자 본 총 계		3,127,254,198		1,074,096,83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130,300,376		1,074,096,833		

다. 손익계산서

투자신탁명 :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

[단위:원]

과 목	제2기(2024.03.17-2025.03.16)		제1기(2023.03.17-2024.03.16)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4,422,482		1,013,671		
1. 이 자 수 익	4,422,482		1,013,671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01,410,733		84,047,342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140,351,948		82,637,047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61,058,785		1,410,295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78,591		325,556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478,591		325,556			
운 용 비 용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05,354,624		84,735,45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92001897		0.09861716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3.17 - 2025.03.16	9	11	15	21	2	2	22	31
2023.03.17 - 2024.03.16	0	0	9	10	0	0	9	11

(주1) 2024.03.17 - 2025.03.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052,679좌/13,937,006원

(주2) 2023.03.17 - 2024.03.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608,797좌/8,159,991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3.17 - 2025.03.16	1	1	1	2	0	0	2	3
2023.03.17 - 2024.03.16	0	0	1	1	0	0	1	1

(주1) 2024.03.17 - 2025.03.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57,711좌/619,500원

(주2) 2023.03.17 - 2024.03.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17,830좌/626,433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3.17 - 2025.03.16	8	10	14	19	1	2	21	29
2023.03.17 - 2024.03.16	0	0	8	9	0	0	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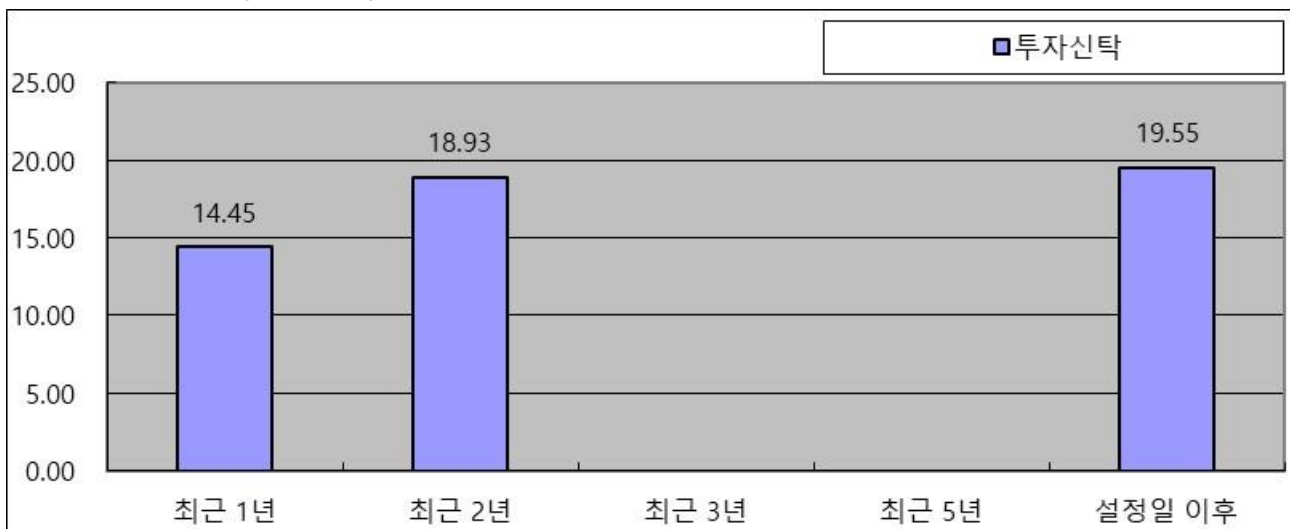
(주1) 2024.03.17 - 2025.03.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687,786좌/13,317,506원

(주2) 2023.03.17 - 2024.03.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134,222좌/7,533,558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4.03.18 ~ 25.03.17	23.03.18 ~ 25.03.17	-	-	23.03.17 ~ 25.03.17
투자신탁	14.45	18.93			19.55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3.47	12.52			12.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13.10				17.43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3.47				12.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13.43	17.88			18.51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3.47	12.52			12.52

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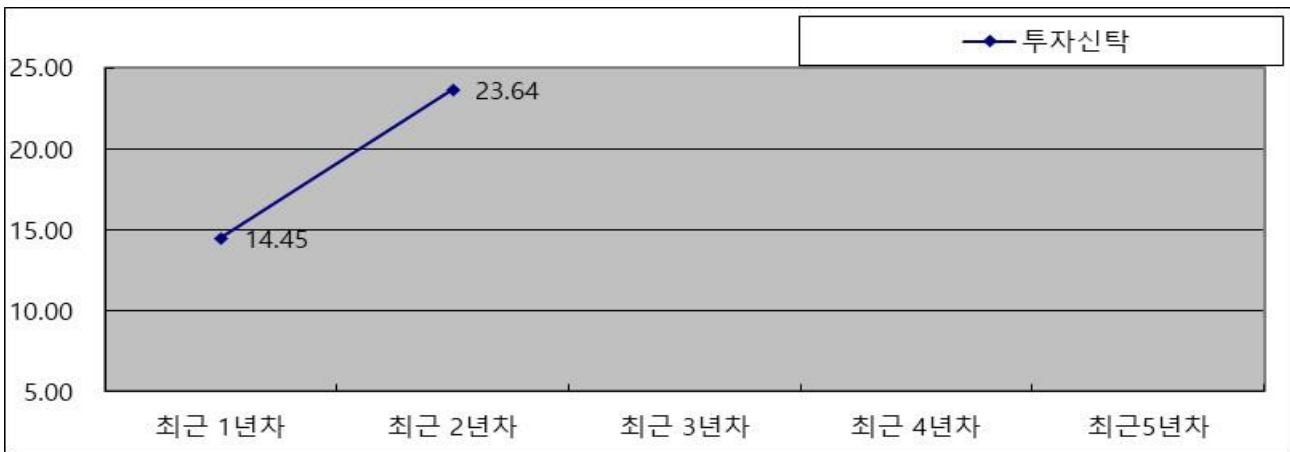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이며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4.03.18 ~ 25.03.17	23.03.18 ~ 24.03.17	23.03.17 ~ 23.03.17		
투자신탁	14.45	23.64			
비교지수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13.10	21.77			
비교지수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13.43	22.56			
비교지수	-	-			

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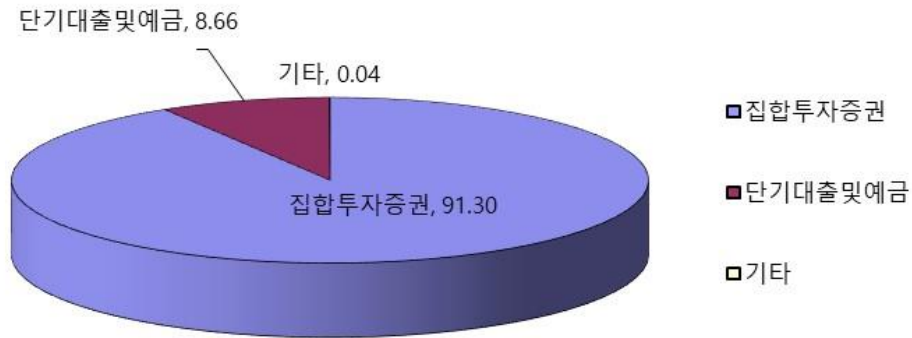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5.03.16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29	0	0	0	0	0	3	0	31
	(0.00)	(0.00)	(0.00)	(91.30)	(0.00)	(0.00)	(0.00)	(0.00)	(0.00)	(8.66)	(0.04)	(100.00)
합계	0	0	0	29	0	0	0	0	0	3	0	31
	(0.00)	(0.00)	(0.00)	(91.30)	(0.00)	(0.00)	(0.00)	(0.00)	(0.00)	(8.66)	(0.04)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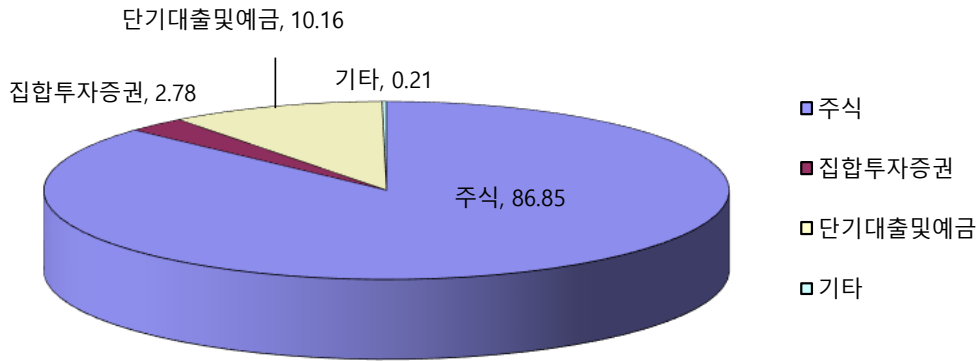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5.03.16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15	0	0	0	0	0	30	2	47
	(0.00)	(0.00)	(0.00)	(30.87)	(0.00)	(0.00)	(0.00)	(0.00)	(0.00)	(63.90)	(5.23)	(4.00)
DKK	11	0	0	0	0	0	0	0	0	0	0	11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EUR	87	0	0	0	0	0	0	0	0	0	0	87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00)
GBP	23	0	0	0	0	0	0	0	0	0	0	23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
HKD	18	0	0	0	0	0	0	0	0	0	0	18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
JPY	32	0	0	0	0	0	0	0	0	0	0	32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00)
USD	852	0	0	18	0	0	0	0	0	90	0	960
	(88.76)	(0.00)	(0.00)	(1.90)	(0.00)	(0.00)	(0.00)	(0.00)	(0.00)	(9.34)	(0.00)	(81.00)
합계	1,024	0	0	33	0	0	0	0	0	120	2	1,179
	(86.85)	(0.00)	(0.00)	(2.78)	(0.00)	(0.00)	(0.00)	(0.00)	(0.00)	(10.16)	(0.2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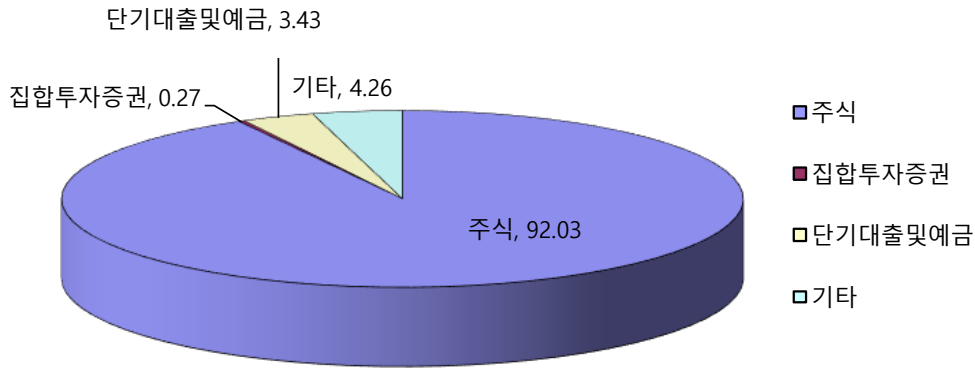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NH-Amundi 증소형주 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2025.03.16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272	0	0	1	0	0	0	0	0	10	13	296
	(92.03)	(0.00)	(0.00)	(0.27)	(0.00)	(0.00)	(0.00)	(0.00)	(0.00)	(3.43)	(4.26)	(100.00)
합계	272	0	0	1	0	0	0	0	0	10	13	296
	(92.03)	(0.00)	(0.00)	(0.27)	(0.00)	(0.00)	(0.00)	(0.00)	(0.00)	(3.43)	(4.26)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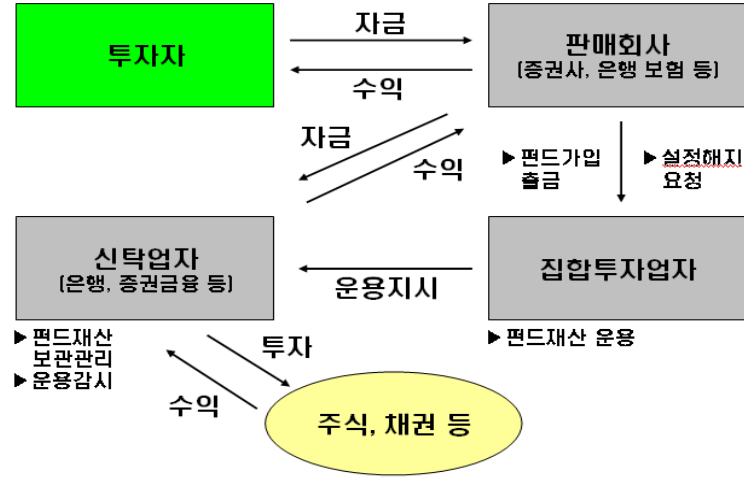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 | | |
|-------------------------|---------|
|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④ 국내 주식 업종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NH-Amundi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10층) 연락처 : 02-368-3600 (www.nh-amundi.com)	
회사연혁	2002.04	농협과 CAAM간 자산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체결
	2003.01	NH농협금융지주와 Amundi의 합작법인 설립 ※ Amundi : 프랑스 크레디아그리폴(CA) 금융그룹의 자산운용 자회사, 2010. 01 CAAM에서 Amundi로 사명 변경
	2003.03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금융감독위원회)
	2003.04	영업개시 및 첫 펀드 설정
	2006.09	국내 대형 연기금 SRI펀드 운용사 선정
	2007.08	NH-CA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09.01	수탁고 10조원 돌파
	2009.06	국내최초 공모 레버리지 펀드 출시
	2010.01	'Amundi자산운용'으로 재출범 (모회사인 Credit Agricole과 Societe Generale의 자본출자)
	2010.01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9년 '최우수 금융신상품상' 수상
	2012.03	'NH농협금융지주'로 새롭게 출범 (모회사인 농협중앙회가 7개의 금융자회사로 구성)
	2015.08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2015.10	대체투자 사업 진출
	2016.05	NH-CA자산운용(주)에서 NH-Amundi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17.07	모회사인 Amundi의 Pioneer(파이오니어) 인수 완료 : 자산규모 1,600조원의 글로벌 Top8 운용사로 발돋움
	2018.02	공무원연금공단 '사회책임투자형' 우수운용사 선정
	2018.03	HANARO ETF 출시

	2018.11	사모 헤지펀드 출시
	2018.1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19.02	KG제로인 2019 대한민국펀드어워즈 '대상' 수상
	2019.02	매일경제 2019 매경증권대상 '펀드부문 대상' 수상
	2022.01	수탁고 50조원 돌파
자본금	400억	
주요주주	농협 60%, Amundi 40%	

나. 주요 업무

(1) 집합투자업자 업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의 선관 의무 등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 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 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펀드파트너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4. 12말	'23. 12말	항 목	'24. 12말	'23. 12말
현금 및 예치금	75,038	73,831	영업수익	92,492	86,309
유가증권	60,411	51,474	영업비용	55,689	50,796
유형자산	1,226	1,369	영업이익	36,803	35,513
기타자산	26,297	23,521	영업외수익	712	517
자산총계	162,972	150,195	영업외비용	292	362
예수부채			법인세	7,225	9,113
기타부채	22,842	20,600	당기순이익	29,998	26,555
부채총계	22,842	20,600			
자본금	40,000	40,000			
이익잉여금	100,130	89,595			
자본총계	140,130	129,595			

라. 운용자산규모

[2025.03.17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24,922	87,523	5,091	0	24,808	52,873	0	10,131	65,681	6,813	153,218	431,061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 위탁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위탁집합투자업자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부담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위탁집합투자업자 보수의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및 위탁집합투자업자가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합니다.

(1)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 및 업무 위탁 범위

해당 펀드	위탁운용사	업무위탁범위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CPR Asset Management	운용업무, 운용지시, 조사분석,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위탁운용사명	CPR Asset Management (설립연도: 1989년)
회사 주소	90 Boulevard Pasteur, F 75730 Paris, France Tel : +33 1 53 15 70 00
회사 소개	'CPR Asset Management' 는 아문디(Amundi) 그룹의 자회사로 25년 이상의 운용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테마 투자에 특화된 글로벌 자산운용사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운용규모: 약 460억 유로)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은행(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홈페이지	02-756-0506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업무
- 상기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2)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엔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빌딩 11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2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연락처	02-3215-1400	02-2251-1300	02-398-3900	02-721-5300	02-785-1410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2000. 6. 16	2011. 6. 9	2020. 6. 19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www.egap.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2)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이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 총회일부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탁계약서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탁계약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 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일로 역산하여 365 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 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합니다.

2. 보상기간: 365 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3. 지급시기: 변경일 전일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222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NH-Amundi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nh-amundi.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 증권에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 회계감사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말일
 - 투자신탁의 해지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서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계약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주1) 상기의 거래내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최근 1년(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부터)간의 거래내역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 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 ⑤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용 어 풀 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기준가 산정 통화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클래스별로 달리 적용하는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이자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및 추가 불입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용 어	내 용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 BM)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 등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비교지수와는 다르게 해당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시 참조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 투자신탁이 반드시 참조지수와 유사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익자에게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